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규정

[시행 2025.6.27]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640호, 2025.6.27, 제정]

충북대학교 043-246-12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북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충북대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
2. "RISE사업"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비"란 RISE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혁신기관"이란 RISE사업에 참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RISE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사업단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충청북도, 세종시 RISE 센터의 관련 규정 또는 충북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충북대학교 RISE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RISE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 RISE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RISE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RISE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RISE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RISE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RISE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RISE사업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RISE사업단장, 대학본부 처·국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및 국제교류본부장
2. 위촉직위원: 혁신기관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개최) ① 정기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제10조(사업단 설치)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기획·집행기구로 사업단을 두며, 명칭은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사업 추진전략 수립·운영 제반사항 지원·관리
2. 사업단의 보조금 확보·교부·배정 및 사업비 운용관리·점검
3. RISE사업 추진과정 점검 및 성과 분석·관리
4. 핵심분야 과제 설정·추진에 관한 제반 지원·관리
5. 사업단의 과제별 추진과정 점검, 성과 관리, 기타 자문
6. RISE사업으로 통합된 사업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사업단 목적에 맞는 사업

제12조(사업단장·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단장·부단장을 두며 충북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장·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 하부조직)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부, 미래인재부, 지산학연협력부, 인재양성센터, 공동연구센터, 충북PRIDE공유대학, 세종RISE사업본부를 둘 수 있다.

제14조(전략기획부) ① 전략기획부는 사업단의 기획·재정 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업무 총괄 기획,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보안 및 서무,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 및 운영, 급여,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전략기획 및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전략기획부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전략기획부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하부조직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15조(미래인재부) ① 미래인재부는 사업단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을 총괄, 조정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전략산업/특화산업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산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채용지원, 맞춤형 교육 및 훈련 지원
3. 산업계와 교육계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4.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지원
5.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기타 창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② 미래인재부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미래인재부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하부조직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16조(지산학연협력부) ① 지산학연협력부는 사업단의 지산학연협력에 관한 사업을 총괄, 조정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산업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기획·관리
2.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3. 방사광 가속기 기반 R&D 지원
4.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기타 지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② 지산학연협력부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산학연협력부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하부조직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인재양성센터) ① 인재양성센터는 특화산업분야 관련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충북 3대 전략산업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2. 시·군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및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기타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 인재양성센터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재양성센터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인재양성센터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그 장을 임명한다.

④ 기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18조(공동연구센터) ① 공동연구센터는 특화산업분야 관련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2.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및 산학프로젝트 Lab. 운영
3. 애로기술 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기타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② 공동연구센터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센터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공동연구센터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그 장을 임명한다.

④ 기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19조(충북PRIDE공유대학) ① 충북PRIDE공유대학은 충북PRIDE공유대학의 사무를 집행 및 지도,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유대학 운영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학사구조 개편 및 실무교과목 운영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지표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에서 필요한 기타 공유대학 프로그램 운영

② 충북PRIDE공유대학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충북PRIDE공유대학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하부조직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20조(세종RISE사업본부) ① 세종RISE사업본부는 세종RISE사업의 세부 사업을 집행 및 지도, 관리한다.

② 세종RISE사업본부장은 충북대학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세종RISE사업본부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세종RISE사업본부 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그 장을 임명한다.

제21조(사무분장) 하부조직의 세부적인 분장 사무는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재양성센터와 공동연구센터 및 세종RISE사업본부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장 또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2조(각종위원회) 단장은 수행중인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 학교대응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사업비 및 회계) ①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는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640호,2025.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